

초국가시대에서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의의 및 가능성*

정 채 연**

I. 들어가며: 초국가시대에서 법다원주의의 의미

1. 세계화와 초국가적 법현상의 출현

현대사회는 곧, 세계화시대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 차원의 교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은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충분히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에서 초국가적으로 공존하는 다수의 법 시스템과 이들의 상호연결을 이해하는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¹⁾ ‘초국가적 법’(transnational law)²⁾이란 국제적(inter-national)인 법질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주권(sovverign) 개념과 민족국가(nation) 단위와 무관한 다양한 법행위자들(legal actors)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다. 초국가적 법현상의 출현은 특히 국제거래법과 같은 ‘초국가적 상법’(Lex Mercatoria)³⁾에서 뚜

* 본 논문은 저자의 “법에서 다원주의의 수용과 발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0의 제4장 초국가시대와 법다원주의 중 일부를 학술논문의 형태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대우조교수, 법학박사, 뉴욕 주 변호사.

1) 법인류학의 새로운 요소로서 초국가적 맥락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논하고 있는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1, 1992, pp. 357-372. 이 논문에 대한 요약 및 서평으로 이상돈·이소영·민윤영·정채연, 「포스트모더니즘과 법」, 세창출판사, 2006, 108-116면.

2) ‘초국가적 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 Jessup, *Transnational Law*, Yale University Press, 1956, p.2.

3) H.-J. Mertens, “Lex Mercatoria: A Self-applying System Beyond National Law?”, *Global Law without a State*(G. Teubner(ed.)), Dartmouth, 1997, pp.31-43.

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초국가적인 기업의 등장,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제도, 유럽연합(EU)의 경제법동화 정책,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법 자문활동 등은 모두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감에 따라 형성되는 초국가적 상법의 예들이다.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은 자신의 정당성 기초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정당성은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포기하지 않는 법의 가능성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⁶⁾ 이러한 정당성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초국가적 법다원주의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며, 국가 사이의 국경을 중요한 한계기준으로”⁷⁾ 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법이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의 구상에서 특히 주목하는 체계가 된다.⁸⁾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식(legal transplant)과 법수용을 통해, 국제적인 법동화 현상이 목격되고,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다원적인 행위 주체들이 등장하며, 다원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정의판단기준)이 공존하고 공유되는 문화의 저변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국가법 차원의 논의 - 특히 켈젠(Kelsen)과 같이 국가와 법을 동일시하는 이해 - 에서 법다원주의로 이론적 전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한층 더 증대되었다.⁹⁾

4) 법동화(Rechtsangleichung) 개념에 대해 자세히는 이준섭, 「EU은행·증권법」, 박영사, 1996, 11면 이하 참고.

5)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573면.

6) 이상돈, 앞의 책, 571면.

7) 양천수 교수는 초국가적 법의 개념 표지로서 ① 법이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효력을 지니고 있을 것, ② 토이브너(Teubner)의 이해와 같이 이분법적 코드를 지니고 있을 것, ③ 하트(Hart)의 이해에 기초해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양천수,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4호(통권 제17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348-349면.

8) 토이브너(Teubner)는 초국가적 법패러다임에서 “국가가 전제되지 않은 법”(law without a state)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G. Teubner(ed.), *Global Law without a State*, Dartmouth, 1997 참고.

9) 이러한 초국가적 법시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정치·경제 분야에서부터 군사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하나의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적·지역적·지방적 차원에서

물론 세계화의 현실이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세계시민사회의 희망을 제시해주면서 동시에 서구사회의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점철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현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반하기 쉬우며 이러한 서구중심의 법패러다임은 경제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IMF와 세계은행은 비서구사회의 서구사회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초국가적 법의 확산은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을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진행시키면서 문화적 획일화를 초래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¹⁰⁾ 무비판적인 세계화와 초국가주의가 가지는 양면적 성격과 위험성은 초국가적 법체계에서 법다원주의의 수용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한다. 곧, 이상적인 의미의 초국가주의가 이미 존재하는 것 내지 이미 실현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과제로서 볼 때, 초국가시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은 교정 가능한 것이 되며, 경찰의 메타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을 수용할 때, 세계화의 이념은 “각국의 고유한 법체계와 법문화가 동등하게 세계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으며, 상호합법성에 기초하여 사안에 따라 각국의 법과 규범이 초국가적인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 국가에게 자유롭고 기회균등하게 주어져야”¹¹⁾하는 것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 시대에서 법다원주의는 모든 세계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에토스가 되는 것이다.

의 함의들을 조율하려는 노력이다. 시민의 법적 지위와 문화적 귀속성의 내적 결합을 통해 구축된 국민국가의 사회적 연대성과 행위능력이 세계화와 다원화의 압력 앞에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에서, 법다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박구용, “법다원주의와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제 10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05, 179-180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자세히는 A. Knight,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Future Multilateralism*(M. Schechter(ed.)), Macmillan, 1999 참고.

10) 이상돈, 앞의 책, 583-586면.

11) 이상돈, 앞의 책, 776면.

2. 초국가시대에서 법체계의 다원성: 지역적 · 국가적 · 초국가적 법체계

초국가시대에서 법체계의 다원성은 지역적 · 국가적 · 초국가적인 법체계의 공존으로 잘 설명된다. 이렇듯 다양한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들은 초국가적 지평에서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교류되고 비판적으로 수정된다.¹²⁾ 이러한 법체계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구성적인 체계로 이해된다.¹³⁾ 이러한 다원성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초국가적 단계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 곧,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상호적 · 동시적 진행¹⁵⁾은 재지역화와 재세계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세트의 무한 반복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 수준들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맺음이 초국가시대에서 법체계의 다원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⁶⁾ 자신만의 고유한 관습을 발전시키고 있는 지방법원들은 이러한 법체계의 다원성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지역법원으로서 민중재판(Popular Justice; people's court)은 국가법과 지역적 규범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를 유지함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다원적인 법질서 간에 중재를 꾀한다.¹⁷⁾

12) 이상돈 · 이소영 · 민윤영 · 정채연, 앞의 책, 116면.

13) 무어(Moore)의 반(半)-자율적인 사회영역 개념은 이러한 초국가적 · 국가적 · 지역적 법체계들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준다. 곧 “지역사회이 법이 어떤 점에서는 국가적, 초국가적 법질서에 의해 구조가 짜여지는 한편, 지역적 규율을 부과하고 문화적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인 영역도 확보하고 있다”(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p. cit., p.366).

14)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p. cit., p.358.

15) 세계화는 인구, 자본, 기술, 지식, 그리고 ‘근대화’ 내지 ‘시민권’ 개념과 같은 상징적 표상들의 전지구적 이동과정을 의미하며, 지역화는 지역 특유의 지식과 외부적 압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A. Barnard(김우영 역),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2003, 296면).

16) 세계화의 시대는 이렇듯 다양한 수위의 법체계들 간의 상호교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법다원주의에 대한 순수욕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이상돈 · 민윤영, 「법정신 분석학입문」, 법문사, 2010, 141면.

이러한 현상은 초국가적 인권담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법다원주의의 초국가적 지평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천적 가능성을 초국가적 인권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특히 서구중심적 국제인권규범의 한계와 다원주의적 인권 이해의 필요성을 아프리카 사회의 여성할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인권문제에 있어 법다원주의가 제시하는 이론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법인류학과 다원주의의 법적 수용

1.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와 상호주관성

법인류학 연구의 다층적 지평 중 법인류학적 다원주의(legal anthropological pluralism)는 법인류학으로부터 성장한 고유의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류학의 발전은 특히 서구법과 비서구법, 국가법과 비국가법, 공식법과 비공식법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법다원주의는 법인류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구체적 설득력이 존재한다.¹⁷⁾ 법인류학적 다원주의가 다른 학제에서 말하는 법다원주의와 다른 고유한 지점은 국가법과 사회규범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법사회

17)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p. cit., p.367.

18) 이상돈 교수는 이러한 법인류학의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① "국가의 실정법을 넘어서 정치적인 입법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집단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 규범과 이를 형성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② "국가법 또한 비체계적이고 이질적이며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입법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양한 부수적 효과들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실정법과 다양한 사회규범들은 고도의 교환관계 속에 있다." ③ "이런 점에서 실정법도 다른 사회규범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반(半)-자율적인 사회영역'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돈,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27면).

학의 경우, -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 기본적으로 국가법과 비국가법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우열관계에서 중앙성(중심성)을 해체하는 데에 법다원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곧 국가법과 비국가법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성되어가는 것이며, 기능적(functional)인 차원에서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법인류학은 법사회학에서 더 나아가 법을 문화로서 이해하며, 문화에 우열이 없듯이 법(규범)들의 다원성 또한 보다 수평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법다원주의의 이론화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는 국가의 공식적 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공식적 법체제도 중요한 문화로서의 법으로서 인정하게 된다.¹⁹⁾

이상돈 교수는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법규범과 사회규범 사이의 날카로운 구획이 사라지고 모든 규범을 설정하는 행위자들을 법정립의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 하는 한, 법이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규율에 대한 합의 절차가 실제로 효력이 있을 때 정립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다원주의의 통찰에서 보면 법개념의 통일성은 소멸하게 되고, 아울러 평등과 같은 법원칙도 희석되며, 통일적인 법이란 단지 전문적인 법률가집단의 이데올로기로만 남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점의 교환절차 속에 존재하게 되면, 합법성은 언제나 상호적인 것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²⁰⁾ 다시 말해,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는 공식적 (국가)법규범과 비공식적 (사회)규범 사이의 상호변증적 내지 구성적 관계²¹⁾로 간결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현대 법인류학의 이론은 이러한 법인류학적 다원주의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²²⁾

19) 이상돈·이소영·민윤영·정채연, 앞의 책, 115면.

20)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139-140면.

21) S. E. Merry, “Legal Pluralism”,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p.880.

22) 1970년대 이후부터 현대 법인류학에서 법다원주의가 지배적인 이론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법다원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다원성(plurality), 관용(tolerance), 그리고 변화가능성(variability)을 제시해볼 수 있다.²³⁾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법다원주의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법다원주의의 훌륭한 모델이 된다. 먼저 법인류학의 세심한 민속지적 작업은 다원적 법규범의 현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주며(다원성의 충족), 문화적 다름과 차이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의 수용과 배움의 성숙된 자세는 이러한 민속지적 작업에서 항상 전제되어 왔고(관용(플레랑스)의 충족), 법을 문화로서 바라보는 법인류학은 법(문화)의 가변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변화가능성의 충족). 다원성, 관용, 변화가능성의 세 요소를 포함하는 법다원주의에서 상호주관성 내지 상호합법성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며, 이러한 상호주관성이야말로 법다원주의를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상호주관성은 이성과 비이성 내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교로서도 법다원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반성적 모더니즘은 근대적 이성 개념의 카테고리 안에 다 환원되지 않는 또 다른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성주의와 탈이성주의를 모두 지양한다. 이는 근대적 이성에 기초하는 법에서 새로운 이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2. 다원주의적 법이해의 실천적 지평

법다원주의적 법이해는 국가법과 비국가법, 공식법과 비공식법, 초국가적 차원에서는 서구법과 비서구법의 날카로운 구분을 지양하고 이들이 양립가

고 보는 W. Menski, *Comparative Law in a Global Context: The Legal Systems of Asia and Africa*(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90.

23) 이에 대해 자세히는 정채연, “법에서 다원주의의 수용과 발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0, 54면 이하.

능함에서 더 나아가 상호협동적, 상호작용적, 상호관계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에 주목한다. 국가법에 대비되는 비국가법을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법다원주의 논의에서 항상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법다원주의 학자들은 국가법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 가운데 항상 중심적이거나 절대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²⁴⁾ 예컨대, 말리노프스키(Malinowski)는 국가가 부재하는 사회에서도 사회규범이 (국가)법규범과 동등한 사회질서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²⁵⁾ 마찬가지로 콜리어(Collier)²⁶⁾와 메리(Merry)²⁷⁾는 법규범과 사회 규범이 단정적인 위계서열적 질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규범적 담론에서 동등한 비중을 갖고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임을 주장한다. 국가법은 그것이 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규범보다 좀 더 유리한 지위를 향유할 뿐이다. 곧 법다원주의적 법이해란 법과 비법의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법은 “법 안에서 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완전하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 밖의 규범이나 관습, 문화로부터 자신을 생성시키는 실질을 가져오는 것”²⁸⁾이다. 따라서 법의 생성은 공식적인 입법기구뿐만 아니라, 법 외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행위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법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법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국가법만이 아닌 비국가법도 승인 내지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국가법과 비국가법의 갈등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법다원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들은 국가법의 억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24) 정채연, “법인류학의 방법론과 실천적 과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54면.

25) B. Malinowski,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Rowman & Allanheld, 1985(1926).

26) J. Collier, “Leg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4, 1975, pp.121-144.

27) S. E. Merry, “Legal Pluralism”, op. cit., pp.869-901.

28) 이상돈 · 민윤영, 앞의 책, 140면.

어 왔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기능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규범에 대한 고찰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 법규범이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²⁹⁾ 국가법과 비국가법을 아우르는 법다원주의는 국가법을 일방적인 억압적 기제로 비국가법을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변화·발전하는 비억압적인 규범으로 상정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은 금지와 억압적 기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국가법을 보호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국가적 규범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 왔다. 다만 비국가법 중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규범 억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생활세계에서 자생적·자발적·규범민주적으로 생성된 비국가법 또한 권력을 배후에 담고 있을 수 있다. 국가법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 사회의 근저에 남아있는 호주제와 같이 비공식적인 규범이 민족이데올로기와 같이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성되고 있는 비국가법 내지 사회규범은 상대적으로 억압적인 요소를 덜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가법을 전제로 하는 근대법이 충분히 자리를 잡기 전부터 근대 국가 이후까지 존재해온 비국가적 규범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의식이 결여된 에토스(ethos)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원주의 패러다임에서 생성되는 규범은 기존의 비국가적 규범과 달리 스스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억압성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법이 비공식적 규범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억압적인 성격을 교정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법과 비국가법의 관계는 억압 대(對) 비억압(자유)의 대립이 아니며, 이 때 법다원주의는 국가법중심주의뿐만 아니라 비국가법중심주의도 극복하는 것이 된다.

29)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제26호, 2008, 13면.

Ⅲ. 초국가적 인권과 법다원주의

1. 국제인권규범의 성장과 한계

1) 인권의 세계화와 레짐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시작된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운동의 역사적인 발전 방향은 ‘인권의 레짐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³⁰⁾ 이러한 국제인권레짐은 인권이 국가 주권의 영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이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환경권과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초국가적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오늘날의 현상은 인권문제가 국가주권의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설득적으로 뒷받침해준다.³¹⁾

2) 국제인권규범의 한계

(1)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주권의 충돌

세계화 시대에 국제인권규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버마스(Habermas)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인권은 초국가적이지만 주권이 아직 국가적 한계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단위의 법공동체와 달리 국제법공동체는 하나의 조직화된 법공동체, 곧, 세계국가로서 조직화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개별국가 차원에서 인권과 주권은 내적으로

30)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의미하는 말로서, 국가 간 함의로 성립된 국제 인권규약 및 실행절차는 물론 비록 국가 간 명시적인 합의는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관행을 지칭한다.”(이원웅, “국제인권레짐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정치논집」 제38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127면).

31) 이상돈, 앞의 ‘기초법학’, 195-196면.

로 연관되어 있지만, 주권의 세계화는 인권의 세계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세계화의 지평에서 인권은 국가주권과 분리되고 서로 충돌하게 된다.³²⁾ 그렇기에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개입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내정간섭’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주권의 문제는 국제인권담론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행위주체가 갖는 한계와도 연결된다.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며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초국가적; transnational) 국가주권을 전제로 하기에(국제적; international)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서구중심적 인권개념과 비서구사회의 소외현상

국제인권규범의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지배적인 국제인권담론이 서구중심적 인권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인권개념의 서구중심성³³⁾은 비서구사회에 대한 소외를 낳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곧, 서구 중심적 인권 개념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과 같이 다른 문화, 역사, 종교적 배경에서 구축된 인권 개념을 포용할 수 없으며, 비서구사회의 인권문화와 담론의 독자성을 반인권적 내지 후진적인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판받는다. 지역적 국제인권문서로서 아프리카인권헌장, 아시아인권헌장, 아랍인권헌장이 서구 중심의 인권 개념과 이에 정초한 인권외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³⁴⁾은 이를 설득력

32) 이상돈·홍성수,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고려법학』 제42호, 2004, 95면.

33) 여기에서 사용되는 서구중심적이라는 표현 내지 서구와 비서구의 구분은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① 먼저 인권으로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예: 아시아적 가치), ② 인권을 구체화하는 방식의 차이(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의 해석(이론 및 실천)에 있어서의 차이), ③ 같은 의미맥락의 인권에서 발견되는 차이(예: 이라크전쟁에서 보여지듯이, 고전적 인권목록에 해당하는 생명권에 대한 해석(전범, 집단학살과 같은 보편적 인권침해여부의 판단)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서구(미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게 뒷받침한다.³⁵⁾

이러한 서구중심의 근대적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은 서구식 헤게모니의 역기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이끌었다. 곧, 다양한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설득의 과정 없이 다른 문화권에 일방적 잣대를 드리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인도적 개입’을 근거로 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이행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거세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서구중심적 인권사상은 서구 강대국들이 문화·역사·사상적 배경을 달리하는 국가와 지역들에 국제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제인권레짐의 형성에 있어 강력한 패권국의 존재(헤게모니)와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국제정치학의 견해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패권국의 군사적·경제적·정보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주장한다.³⁶⁾

특히,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헤게모니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정책³⁷⁾은 ‘북한인권법안’(The North Korea

34) D. A. Bell, “The East Asian Challenge to Human Rights”, *HRQ*, Vol. 18, No. 3, 1996; T. Gottfried, *Capital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Debate*, Enslow, 1997; W. E. Langley, *The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IPSR*, Vol. 19, 1985 참고.

35)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구의 외교적 압력에 대항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에서 생성된 인권과 자유의 원칙이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비서구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3년 방콕선언은 “인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국제적 규범의 설정이 역동적이고 진화중이라는 맥락에서 국가별·지역별 특성과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인권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방콕 선언문은 인권을 둘러싼 서구의 외교정책이 아시아에 대한 패권적 배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의 인권개념을 넘어서, 아시아적 특수성을 담은 ‘아시아적 인권개념’을 창조하겠다는 것이다.”(김웅진 외, “국제정치체제의 쟁점”, 『현대정치학 서설』, 세영사, 2001, 245면).

36) 이원웅, 앞의 논문, 131면.

37) 미국의 인권외교가 갖는 “보편적 도덕주의” 내지 “일방주의”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는 백창재,

Human Rights Act)에서도 잘 나타난다.³⁸⁾ 이러한 인권외교정책은 오히려 타 문화권의 근본주의를 자극하기도 한다.³⁹⁾ 이렇듯 초국가적 인권문제에 있어 서구중심적 인권개념은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서구식 헤게모니의 성격을 내포하는 인권보호의 양면성과 위장된 합리성은 인권에 대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보다는 차이와 대립을 부각시킨다.

나아가 지금의 지배적인 국제인권담론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Human Rights Declaration)에서 ‘보편적’(universal)이라고 수식될 만큼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인권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보편적 인권이라 함은 현대에 이르러 역사적으로 특수화된 것이며, 지금 시점에서 외관상 보편성을 많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도 지금의 보편적 인권은 변화에 열려있다. 그러므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인권은 이데올로기적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이 정초(定礎)하고 있는 ‘현재의’ 보편적 인권을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이슬람, 아프리카 등 세계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의 인권 개념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보편성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거나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다투어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 제1호, 2003, 126-127면.

38) 상호합법성 측면에서 북한인권관련 법정책을 다루는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211-234면.

39) 플레처(Fletcher)는 이슬람 문화에서의 집단책임에 대해 논하면서, 이슬람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적개심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배후집단에게 집단적 책임을 묻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대표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현이라고 판단되는 9.11 사건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재판제도는 이렇듯 다양한 문화, 역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서구적인 장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곧 ‘국제’형사재판제도는 ‘국제적’인 보편성을 아직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플레처의 집단책임이론에 대해 자세히는 안성조,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289-323면 참고.

질 가능성이 있는 보편성' 내지 '낮은 단계의 보편성'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큰 그림에서는 문화적인 가족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인권, 이슬람의 인권, 아프리카의 인권, 남미(남유럽)의 인권, 서유럽(북유럽)의 인권, 동유럽의 인권, 북미의 인권 등으로 구체화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잘게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구체화는 인권 개념을 파편적이고 용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 개념이 초국가적 인권담론에서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초국가적 인권담론과 법인류학적 다원주의

1) 초국가적 인권담론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과 기여

초국가적 인권담론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은 인권을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된 기준”이라고 정의한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반박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초국가시대에서 보편적 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현대 법인류학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곧,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인권에 대한 주장은 인류학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상대주의적 내지 다문화주의적 성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⁴⁰⁾ 초국가적 인권에 대한 인류학의 주목할 만한 기여는 제3세계 국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제3세대 인권이 주장되어 국제적 인권 규범의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도록 이론적·실천적으로 도왔다는 데 있다. 이는 집단적 권리로서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 ‘개발권(development rights)’, ‘평화에 관한 권리’,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발전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3세대 인권은 서구 인권 사상의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와 기존의 서구적 인권담론이 갖고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적(ethnocentric) 관점에 대한 비

40)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p. cit., p.369.

판에 근거한다.⁴¹⁾

특히, 제4세대 인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집단적·토착적 권리’(collective and indigenous rights)가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⁴²⁾ 이는 자신들의 고유한 토착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한다.⁴³⁾ 초국가적 인권과 지역적 문화와의 관련성을 개념 자체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토착적 권리는 인류학의 법다원주의가 일궈낸 특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인류학자들은 토착적 문화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토착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와 기구들을 통해 토착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탈식민지 국가에서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운동으로 나아갔다. 토착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문화(법)다원주의적 관점과 이를 위한 인류학의 비교방법론적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⁴⁴⁾

2) 초국가시대에서 인권과 법인류학적 다원주의

초국가시대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윌슨(Wilson)은 “인권의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서의 긴장”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한 바 있다.⁴⁵⁾ 남아프리카의 인권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는 정의, 법적 절차와 법의 역할수행, 사회적 기제의

41) E. Messer, “Anthropology and Human Right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2, 1993, pp.222-225.

42) 이렇듯 집단성·토착성으로 설명되는 토착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주체로 하는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1세대 인권(자유권), 제2세대 인권(사회권), 제3세대 인권(참여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메타적인 권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43) E. Messer, op. cit., pp.222-225.

44) E. Messer, op. cit., pp.236-237.

45) R. A. Wilson(ed.), *Human Rights: Culture and Context*, Pluto Press, 1997, p.23.

배경 및 출처가 다양하고 각자 상이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초국가시대에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⁴⁶⁾ 그는 초국가적 맥락의 다양성 속에서 규범적 대화에 바탕을 둔 권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해석되며 체현되는 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⁴⁷⁾ 초국가시대의 인권은 다수의 법정책들 간의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사적(rhetorical) 전략이 되기도 한다.⁴⁸⁾ 이에 따라 인권 관념에 관한 지역마다의 상이한 형태의 승인을 구체적으로 이론화⁴⁹⁾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화 시대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란 서구와 비서구를 ‘이성과 야만’ 내지 ‘합리와 비합리’로 구분하는 관점을 해체하고, 초국가적 인권규범의 제정자와 수신자를 고정적으로 위치지우는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⁵⁰⁾ 이는 인류학적 통찰을 기본 바탕에 둔 법다원주의를 통해 문화적 상호성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국가적 인권의 지평에서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그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초국가적인 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 되고, 그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와 고유한 체제가 초국가적 인권규범을 형성하는 상호작용과 관점교환의 기초로서 승인”⁵¹⁾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초국가적 인권의 보편성이 상호합법성(Interlegalität)의 개념으로 재구성될 때, 우열이 없는 다문화화를 전제로, 다문화 사이의 법 또는 합법성을 동등한

46) S. F. Moore, “Certainties Undone: Fifty Turbulent Years of Legal Anthropology, 1949-1999”, Huxley Memorial Lectur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7, No. 1, 2001, p.107.

47) 대표적으로 R. A. Wilson, “Reconciliation and Revenge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Rethinking Legal Pluralism and Human Rights”, *Current Anthropology*, Vol. 41, 2000, pp.75-98.

48)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p. cit., p.369.

49) R. A. Wilson, “Reconciliation and Revenge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op. cit., p.86.

50) 이상돈, 앞의 ‘기초법학’, 197면.

51) 이상돈, 앞의 ‘기초법학’, 197면.

것으로 바라보고,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에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상돈 교수는 이러한 상호합법성을 다원주의적 유니코드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⁵²⁾ 모든 전압에 사용가능한 전기코드와 같이 초국가적 인권담론에서 이러한 유니코드는 어떠한 구상과 프로그램, 결정규칙이 자리잡게 될지 완전히 열려있는 보편적 코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각 사회의 인권공론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합법성에 맞춰질 수 있는 가변적 코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코드변환의 방향은 초국가적 인권공론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⁵³⁾ 다원주의적 유니코드를 통해 특정한 메타법(meta-legal)이 존재하지 않는 상호인정의 단계에 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합법성에 기반한 합의⁵⁴⁾는 특정한 권력의 의지가 투입된 것이 아닌 세계적 지평에서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구체화되어지는 인권을 자리 잡게 한다. 다만, 이때에도 상호합법성에 기반한 초국가적 인권은 “다투어질 수 있는 보편성”(contested universality)⁵⁵⁾을 지닐 뿐이다. 초국가적 인권공론⁵⁶⁾은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교류를 필요로 하며,⁵⁷⁾ 다원주의적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법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한다. 곧, “문화적 다원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인류보편적 가치를 대화적 방식으로 창출·확장해가는 시민사회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⁵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

52) 이상돈, 앞의 ‘인권법’, 140-141면.

53) 이상돈, 앞의 ‘인권법’, 197-198면.

54) 초국가시대에서 상호합법성이란 “사안에 따라 그 때 그 때 각기 다른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법에 의해 규율될 가능성과 그런 가능성의 상호적 승인”을 의미하며, 세계화 시대에서 이러한 상호합법성으로 확장되지 않는 정합성은 법체계의 외부적 힘에 의해 깨지기 쉬운 것이 된다(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9, 18면).

55) 이상돈, 앞의 ‘인권법’, 141면.

56) 이러한 초국가적 공론이란 “다양한 국가의 이질적인 집단들이 인권담론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의 수혜자와 의무부담자 사이의 관점과 역할을 교환하고,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세력들 사이의 절차적인 의견형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특히 인권이 침해된 자들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형성되는 공론”을 말한다고 한다(이상돈,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101-102면).

57) 이상돈, 앞의 ‘기초법학’, 198-199면.

58) 이상돈, 앞의 ‘법학입문’, 39면.

다.⁵⁹⁾ 이러한 법인류학의 법다원주의적 인식은 모더니즘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며 서구와 비서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서구가 다른 세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새로운 서구화를 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은 비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와 여성할례

초국가적 인권에 있어서의 법인류학적 다원주의를 여성할례전통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유년기와 결혼적령기 사이에 있는 여성들의 외부 생식기에 행하는 외과 수술, 곧 여성할례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인권담론에서의 비판은 이미 오랫동안 행해져왔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마련해 놓음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여성할례에 대한 (주로 형법적) 규율의 마련을 외교정책 상에서 요구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여성할례에 대한 서구적 인권담론의 개입은 아직 여성할례에 대한 합법성이 초국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성급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할례의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해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 여성할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출발점은 여성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서구의 인식으로 모든 할례가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빼앗고 간통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여성억압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의문을

59) 이러한 구상으로 이상돈·클라우스 귄터·변종필, “세계화에 따른 범문화의 변화와 범개혁의 과제”,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7-38면 참고.

60) 여성할례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자세히는 A. Rahman & N. Toubia, *Female Genital Mutilation: A Guide to Laws and Policies Worldwide*, Zed Books, 2000, p.149.

제기해 보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⁶¹⁾

1. 여성할례 풍습과 서구국가의 법제

여성할례의 합법성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특히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를 처벌하는 형벌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의 Health and Safety Code 124170(2004)의 Part 2. 제3장(Child Health) 제8조(Female Genital Mutilation Prevention)에서는 이민 집단들의 여성할례라는 전통적 관습은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므로 기존 형법(Penal Code) Section 27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주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동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4개 주에서는 그러한 예외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손상”(intentional injury)이라는 기존의 형법 규정의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여성할례 관습을 고수하는 이민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⁶²⁾ 일부 선진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성할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적극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행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로 버키나 파소(Burkina Faso),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가나(Ghana) 등의 국가들은 여성할례에 대한 형벌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⁶³⁾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근거한 기소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

61) R. S. Oboler, *Women, Power, and Economic Change: The Nandi of Keny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62) R. S. Oboler, “Law and Persuasion i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odification”, *Human Organization*, Vol. 60, No. 4, 2001, pp.311-312.

63) A. Rahman & N. Toubia, op. cit., p.149.

려 여성할례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에 비해, 처벌 조항을 마련한 후부터는 시민들이 무관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오히려 은밀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여성할례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감소하는 역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케냐의 난디 부족 사례 연구

여성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서구의 인식, 곧 모든 할례가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빼앗고 간통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여성억압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⁶⁴⁾ 법인류학은 다원적 인식을 밀바탕에 두고 외부인의 관점에서 매우 잘못된 근거에 입각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관행을 고수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믿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에서 여성할례를 바라본다. 기존의 여성할례에 대한 서구적 편견을 재고하게 하는 여성할례에 대한 민속지 중 하나로 오볼러(Oboler)가 행한 케냐(Kenya)의 난디(Nandi) 부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케냐 국민의 60~70%는 전통적으로 여성할례를 행하는 부족에 속해있다. 그 중 난디 부족은 전통적으로 음핵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여성이 결혼하기 직전, 즉 결혼적령기에 행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할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고통이 동반된 통과의례로 여겨져, 남성에게는 전사다움을, 여성에게는 자녀출산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소녀들의 경우 소규모 집단으로 모여서 할례를 받았으며,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소수이긴 하지만, 30대 이하의 여성들 중 20%는 할례를 거치지 않았다.⁶⁵⁾

난디 부족에게 할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64) R. S. Oboler, *Women, Power, and Economic Change*, op. cit.

65) R. S. Oboler, "Law and Persuasion i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odification", op. cit., p.314.

위한 일종의 고통이 동반된 통과의례로서, 남성에게는 전사다움을, 여성에게는 자녀출산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소녀들의 경우 소규모 집단으로 모여서 할례를 받았으며,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난디 부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빼앗아 정절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혼적령기의 여성에게 용기를 시험해보는 일종의 의식(儀式)이었다. 또한 난디 부족은 성적 쾌락을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동시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들이 행하는 할례의 정도는 성적 쾌락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난디 부족의 여성에게 있어 할례는 여성들 간의 동질감과 연대감, 그리고 자긍심 형성을 위한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난디 부족의 소녀들은 3~5명 정도 그룹을 이루어 이들의 의식 기간 동안 할례를 하고, 가족, 친지, 친구들로부터 축하의 선물을 받으며 이러한 축제 행사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⁶⁶⁾ 곧, 이들 부족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은 여성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의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의식을 위해 소녀들은 상당한 정신적 수련과정을 거치고, 음핵절제로 인한 상처의 회복을 일종의 삶의 훈련과정으로 이해한다. 곧 할례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로 나아가는 소녀의 삶의 과정을 축하하고 여자다움을 준비하고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⁶⁷⁾

3. 여성할례에 대한 법인류학적 평가

위의 사례는, 모든 여성할례의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⁶⁸⁾ 할례 전통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고

66) R. S. Oboler, "Law and Persuasion i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odification", op. cit., p.315.

67) 이에 대해 자세히는 R. S. Oboler, "Law and Persuasion i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odification", op. cit., pp.311-318.

68) 그루엔바움(Gruenbaum)도 여성할례의식이 어느 곳에서나 단일한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있음을 각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할례를 지속하는 근본적 동기를 밝혀내는 신중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법인류학적 접근이 이 지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여성할례가 여성에 대한 억압적 기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넓은 의미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여성할례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이 증가함으로써 그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성할례가 반드시 여성에게 억압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자유권)에 대한 인식은 서구사회에서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철저한 금욕주의적 전통은 서구에서 더 일반적이었다. 이를 볼 때, 금욕주의도 하나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 성장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에서 여성할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권 억압적이라고 판단할 수만은 없게 된다.

이렇듯 여성할례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인권 억압적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회 안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억압적인 기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⁹⁾ 할례를 고수하는 과도된 민족주의와 자발적으로 형성된 전통은 분명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연속성은 문화정체성을 위해 어떤 전통적 관행이 유지되고 어떤 것들이 탈락될지에 대한 일종의 공적 경쟁이다. 자민족의 문화적 완전성을 위해 본질적인 문화적 요소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관점이기도 한 반면, 몇몇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적인 이해

다양한 형식과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모든 할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E. Gruenbaum, *The Female Circumcision Controversy: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p.156). 또한 바바툰데(Babatunde)는 케투 요루바(Ketu Yoruba) 부족에서의 할례가 “다산의 상징인 신성한 도구를 아주 약간 상처냄을 통해, 다산의 신에게 더 많은 자손과 순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E. Babatunde, *Women's Rites Versus Women's Rights: A Study of Circumcision Among the Ketu Yoruba of South Western Nigeria*, Africa World Press, 1998, p.181)는 점을 주장하였다.

69) 억압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법문학을 통한 내레이션을의 수용과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상돈·이소영, 「법문학」, 신영사, 2005, 285면 이하 참고.

관계이기 쉽다. 곧, 여성할례에 대해 서구사회가 야만적으로 드리우는 일방적 잣대도 지양되어야겠지만, 자발적으로 형성된 전통과 오도된 민족주의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 토착사회 안에서도 변화의 과제는 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할례에 대해서 서구의 인도적 개입이라는 정치적 지배로 나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회 내부에서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이를 재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을 타파하여 성찰적 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4. 여성할례와 인권에 대한 법의 올바른 역할

초국가적 인권문제에 있어서 법의 다원주의적 기획과 역할은, 예컨대, 여성할례를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평가하는 데에 있지 않다. 법이 도덕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적 강제는 가혹하고 엄격하며, 문화적으로 둔감하기 쉽고 관습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도 다 담아낼 수 없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까지 무리하게 법이(특히 형법이) 잣대를 드리우게 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할례를 지속하고자 하는 부족들은 또 다른 논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오히려 더 억압적인 행태로 고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곧 외부의 억압이 지속된다면 전통적 관습들은 더욱 더 강력하게 그 입지를 굳혀갈 것이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⁷⁰⁾ 실제로 서구의 반(反) 여성할례 운동의 목표가 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할례의 비율은 실제로 이러한 인권운동이 생성되기 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⁷¹⁾

70) 이러한 점은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후반의 케냐 키쿠유(Kikuyu) 부족에서 발생한 여성할례 강제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다. 자세한 것은 C. G. Rosberg & J. Nottingham, *The Myth of the "Mau Mau": Nationalism in Keny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66, pp.105-135 참고.

71) 기존 삶의 방식이 공격된다고 느낄수록 공동사회의 재결집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현상은 “피포위 의식”(被包圍 意識; siege mentalities)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E. Babatunde, op. cit., pp.179-181 참고.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여성할례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The Horn of Africa Resource and Research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여성할례라는 자신들의 오랜 전통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는 서구의 편파적 인식과 이에 기초한 인권운동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⁷²⁾ 할례의식을 실행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녀들의 삶에 득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할례관습을 따른다. 자기사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두었을 때 현저히 부당해 보이는 믿음 일지라도 이를 추구하게 하는 고유한 상황적 맥락이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감수성이 요청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할례와 같은 문화적 전통에 개입하는 것이 또 다른 모습의 일방적 강요나 위장된 합리성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성형을 법으로 금지 내지 조장할 수 없고, 단지 사람들의 성찰적 대화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듯이, 법의 역할은 성찰적 대화로의 통로를 제공하는데 두어야 한다. 또한 여성할례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이러한 사회에 잔존할 수 있는 억압된 삶에 대해 귀를 기울여 이러한 억압적 기제를 해소하는 데에 그 역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기존 체제에서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한다. 대화적 열린마당이 생기면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대체가능한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의 역할은 할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할례의 지속, 강화, 혹은 약화, 대체를 가져올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법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에 맡겨 놔야 할 뿐이다.

다시 말해, 할례를 안 할 가능성과 할례 풍습으로 인한 내면의 억압을 말할 수 있는 공적인 대화가 보장된다면 할례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72) L. J. Hussein, *Report on the Ottawa Consultations on Female Genital Mutilation Held for Representatives of the Somali Community*, Canada Department of Justice, 1995, p.8.

것이다. 즉 인권개념의 작동을 법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여성할례를 금지하는 입장과 이를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입장, 양자에게 이중적 코드로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여성할례를 안 따르는 자와 따르는 자 모두 내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문화권을 넘어서선 끊임없는 교류가 요구되는 지금, 서구는 법인류학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게 되며, 토착사회 역시 서구적 가치와 대화함으로써 발전적 변형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할례에 대한 법인류학적 연구와 성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는, 여성할례와 같은 인권문제는 해당 공동체 밖에서 이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바탕을 둔 할례 의식의 개별적 맥락의 이해와 상호합법성을 이끌어내는 성찰적 공론장의 마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법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성할례를 거부할 개인의 권리가 토착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인 것은 아니다. 여성할례를 무조건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과,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는 양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초국가적 인권운동의 방향성

법다원주의는 국제적 인권운동과 같이 인권을 법적 에토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인권담론과 지역성은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면서 상호재해석되는 과정을 겪는다. 초국가적 인권공론과 각 국가의 시민사회 사이에 펼쳐지는 상호작용과정은 각자가 스스로 인권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적으로 변화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⁷³⁾ 각각

73) 이상돈, 앞의 '기초법학', 198면.

의 지역적 지식은 초국가적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국제인권담론을 변화시키고 이는 동시에 지역성(locality)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인권담론의 절차는 세방화(glocalization) 개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세계화(보편화)와 지방화(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편화와 지역화의 사이에 존재하는 헤르메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다른 인권개념을 접하지 않은 폐쇄된 사회에서 인권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그 해당 인권 문화의 변화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이 된다.

초국가적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제인권담론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승인된 인권목록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도 승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인권인식과 지역적·사회문화적 정의관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⁷⁴⁾ 이렇듯 바람직한 초국가적 인권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범인류학적 다원주의의 실천적 지평을 발견할 수 있다.⁷⁵⁾

74) S. E. Merry,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ocal Activism: Mapping the Middl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8, No. 1, 2006, p.38.

75) 지역적 권리주장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민속지적 분석으로 H. J. Abdullah, "Religious Revivalism,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in Nigeria", *Cultural Transformation and Human Rights in Africa*(A. An-Na'im(ed.)), Zed Books, 2002, pp.151-191; M. Goodale, "Legal Ethnography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Arrival of Western Human Rights Discourse to Rural Bolivia", *Practicing Ethnography in Law: New Dialogues, Enduring Methods*(J. Starr & M. Goodale(eds.)), Palgrave Macmillan, 2002, pp.50-72; C. Nyamu-Musembi, "Are Local Norms and Practices Fences or Pathway? The Examples of Women's Property Rights", *Cultural Transformation and Human Rights in Africa*(A. An-Na'im(ed.)), Zed Books, 2002, pp.126-150 참고.

〈참고문헌〉

-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_____,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_____, 이소영 · 민윤영 · 정채연, 「포스트모더니즘과 법」, 세창출판사, 2006.
- 박구용, “법다원주의와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제10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05.
-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_____,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4호(통권 제17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이상돈 · 클라우스 귄터 · 변종필, “세계화에 따른 법문화의 변화와 법개혁의 과제”,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 이원웅, “국제인권레짐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정치논집」 제38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 A. Rahman & N. Toubia, Female Genital Mutilation: A Guide to Laws and Policies Worldwide, Zed Books, 2000.
- C. G. Rosberg & J. Nottingham, The Myth of the “Mau Mau”: Nationalism in Keny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66.
- E. Babatunde, Women’ s Rites Versus Women’ s Rights: A Study of Circumcision Among the Ketu Yoruba of South Western Nigeria, Africa World Press, 1998.
- E. Gruenbaum, The Female Circumcision Controversy: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 E. Messer, “Anthropology and Human Right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2, 1993.
- G. Teubner(ed.), Global Law without a State, Dartmouth, 1997.

- J. Collier, “Leg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4, 1975.
- L. J. Hussein, *Report on the Ottawa Consultations on Female Genital Mutilation Held for Representatives of the Somali Community*, Canada Department of Justice, 1995.
- P. Jessup, *Transnational Law*, Yale University Press, 1956.
- R. A. Wilson(ed.), *Human Rights: Culture and Context*, Pluto Press, 1997.
- R. A. Wilson, “Reconciliation and Revenge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Rethinking Legal Pluralism and Human Rights”, *Current Anthropology*, Vol. 41, 2000.
- R. S. Oboler, “Law and Persuasion in the Elimination of Female Genital Modification”, *Human Organization*, Vol. 60, No. 4, 2001.
- _____, *Women, Power, and Economic Change: The Nandi of Keny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 S. E. Merry, “Anthropology, Law, and Transnation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1, 1992.
- _____, “Legal Pluralism”,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 _____,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ocal Activism: Mapping the Middl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8, No. 1, 2006.
- S. F. Moore, “Certainties Undone: Fifty Turbulent Years of Legal Anthropology, 1949-1999”, Huxley Memorial Lectur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7, No. 1, 2001.
- W. Menski, *Comparative Law in a Global Context: The Legal Systems of Asia and Africa*(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국문초록】

초국가시대에서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의의 및 가능성

정 채 연*

세계화 시대에서 초국가적으로 공존하는 다수의 법 시스템과 이들의 상호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식과 법수용을 통해, 국제적인 범동화 현상이 목격되고,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선 다원적인 행위 주체들이 등장하며, 다원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공존하고 공유되는 문화의 저변이 확대됨으로써 초국가적 법다원주의는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초국가시대에서 법체계의 다원성은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인 법체계의 공존으로 잘 설명된다. 이렇듯 다양한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들은 초국가적 지평에서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교류되고 비판적으로 수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초국가적 인권담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법다원주의의 초국가적 지평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류학적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천적 가능성을 초국가적 인권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특히 서구중심적 국제인권규범의 한계와 다원주의적 인권 이해의 필요성을 아프리카 사회의 여성할레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인권문제에 있어 법다원주의가 제시하는 이론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초국가적 인권, 법다원주의, 법인류학, 민속지, 여성할레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대우조교수, 법학박사, 뉴욕 주 변호사.

【ABSTRACT】

The Significance and Possibilities of Legal-Anthropological Pluralism in the Age of Transnationalism

Jung, Chea Yun*

In the era of transnationalism, the plurality of legal systems is well explained by the coexistence of local, national, and transnational laws, and legal pluralism is being revisited to fully understand the multiple and interconnected legal systems coexisting on the transnational dimension. The laws constituting the various legal systems are democratically exchanged and critically revised by heterogeneous and plural actors. This phenomenon is significantly evident in the trans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egal-anthropological pluralism. The paper first outlines the discussion of legal-anthropological pluralism and examines its practical possibilities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limitations of the western-orien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significance of a pluralistic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will be addressed with a focus on female genital mutilation in African society.

Keywords : Transnational Human Rights, Legal Pluralism,
Legal Anthropology, Ethnography, Female Genital Mutilation

* Collegiate Assistant Professor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Ph.D. in Law, Attorney at Law (New York State).